

# 위원 후보 추천 동의서

성           명 :

생   년   월   일 :

현   주   소 :

본인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되는 것에  
동의합니다.

2017. 12. .

(인)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

# 결 격 사 유 확 인 서

성           명 :

생   년   월   일 :

본인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를  
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.

1. 「방송법」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님
2. 「정당법」에 따른 당원이 아님
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의 각 호의 1에 해당사항이 없음
 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17년 12월 일

위 확인자 :

(서명 또는 날인)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